

- 25 【 】
- 26 【 】
- 27 【 】
- 28 【 】
- 29 【 】
- 30 【 】
- 31 【 】

6

- 32 【 】
- 33 【 】
- 34 【 】
- 35 【 가 】
- 36 【 】
- 37 【 】
- 38 【 】

2 ()

8 【 1 】

1 (가
1 , 가 가
1)
가 1 1
“ ” , (1
가 1)
가 가
2 가
1. 21 () 가
2. 20 (가) 가
가
가

9 【 2 】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10 【 】

- ① 제 11 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는 제 31 조(약관대출)에 의한 약관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자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3 ()

13 【 】

- 가 가
 (1“ ”) .
1. (1) :
 2. 1 가 :

14 【 】

- 가 2 3 가
 .
- 13 () 가
 , , 27 () 2
 (2) (“ ”)
- 가
 1 13 () 180
 180
- 가
 .
- 가
 1 13 ()
 2 가 가 .

15 【 】

- 가 가
 .
1. 가
 , 가 ()
) 2
 1 가 .
 2.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6 【 ,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7 【 】

18 【 】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19 【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

20 【가 】

()

(“ ”)

“ ”)

3

5

23 【 】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4 【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 2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25 【 】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26 【 】

수익자는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7 【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 +1%
- 17 () 1 19 ()
1. 가 : 1
- 50%, 1 1%
2. : +1%
- 가 6 13 ()
-) 1 19 ()
1. 가 (,)
- 가 가) :
2. (, 가 가)
-) : 1 50%,
- 1 1%
3. : +1%

29 【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13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28 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0 【 】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 조, 동법 시행령 제 12 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3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31 【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6

32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3 【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34 【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35 【 가 】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6 【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7 【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38 【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1) _____

① 만기보험금 (약관 제 13 조 제 1 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 (제 1 급 장애상태는 제외)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사망보험금 (약관 제 13 조 제 2 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 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별표 2)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 호, 1995. 1.1. 시행)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 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파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10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내지 7 중 또는 제 4 급의 5 내지 11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 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 5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발가락 내지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정도의 기형 또는 정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 6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 발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분류해설)

1. 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 4 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 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내지 (5)의 항목 중 1 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5.“ ”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애가 아닌 시야장애, 안구운동장애 등의 눈의 장애는 제외한다.
- 6.“ ”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애, 굴절 장애, 안구운동 장애, 조절 장애,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 7.“ ”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口,ㅂ,ㅍ), 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 중 3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8.“ ”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9.“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0.“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 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1.“ ”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 대 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 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식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

팔다리 각각의 3 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 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Sigma \times$ 비례치)이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 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 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 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 가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 가 ”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cm 이상 또는 직경 5 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cm 이상 10 cm 미만 또는 직경 2 cm 이상 5 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 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 1 급의 5,6,7,8,9, 제 2 급의 3,4,5, 제 3 급의 8 또는 제 4 급의 12 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애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4

14 []

15 []

5

16 []

2 (2) (“ ”)

가
10 () 180
180

가
가
1 10 () 가
가

12 【 】

가 가

1. 가
가 (가
) 2 1 가

2. 가
가

3. 가
1 가

- 1. 1 1
- 2. 1 2
- 3. 1 3

13 【 】

“ ”

14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5 【 】

14 () ,

3

10

1

7

13 () 1

1. 가 : 1 50%,

1 1%

2. : +1%

5

16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_____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사망보험금(약관 제 10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 만원

(별표 2)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와 동일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4

14 []

15 []

5

16 []

(별표 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 10 조)

지급 사유	지급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재해로 인하여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해시	1,000 만원

(별표 2)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가

1

- 1 []
- 2 []
- 3 []
- 4 []
- 5 []
- 6 []

2

- ()
- 7 []
- 8 []
- 9 []

3

- ()
- 10 []
- 11 []
- 12 []
- 13 []

4

- 14 []
- 15 []

5

- 16 []

가

1

1 【

가 . (“ ” “ ” , “ ” “ ” ,
“ ” “ ”)

1

가

2

1

(가

1

가

가

1

.)

2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3 【

가

.

가

가

,

가

13 ()

4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2)

(“ ”)

가

10 ()

180

180

가

가

1

10 () 가

가

10 () 가

(“ ”)

가

5

가

5

5

가

가

가

12 【 】

가

가

1. 가

가

) 2

1

가

2. 가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3 【 】

4

14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5 【 】

14 ()

3

10

1

7

10 ()

2

가

가

7

가

, 가

1. 가 :

2. : +1%

13 () 1

1. 가 : 1 50%,

1 1%

2. : +1%

- 가 2 (2 가 10 ())
1. 가 (, 가) :
 2. (, 가) : 1 50%,
 3. 1 1% : +1%

5

16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_____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가족수입연금(약관 제 10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 1 급의 장애시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매월 10 만원 (5)

(별표 2)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와 동일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4

14 []

15 []

5

16 []

1

1 【 】

가 가
 가 . (“ ” “ ”, “ ”
 “ ”, “ ” “ ”)
 1
 가 .
 1 (가
 1 , 가 가
 1 ,)
 .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가
 .
 가 가
 , 가 13
 () .

4 【 】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 소정의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6 【 】

(“ ”) 1 가 3
가 .

2 () .

7 【 】

.

8 【 】 【 】

1 2 .

9 【 】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

10 【 】 【 】

 가 1 가
(1“ ”) 가
 (“ ”) .

4

14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5 【 】

14 ()

3

10

1

7

13 () 1

1. 가 : 1

50%, 1 1%

2. : +1%

5

16 【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가. 지급사유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나. 지급액

① 7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년미만	100.0%
1년이상 2년미만	85.7%
2년이상 3년미만	71.4%
3년이상 4년미만	57.1%
4년이상 5년미만	42.9%
5년이상 6년미만	28.6%
6년이상 7년미만	20.0%

② 10 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 년미만	100.0%
1 년이상 2 년미만	90.0%
2 년이상 3 년미만	80.0%
3 년이상 4 년미만	70.0%
4 년이상 5 년미만	60.0%
5 년이상 6 년미만	50.0%
6 년이상 7 년미만	40.0%
7 년이상 8 년미만	30.0%
8 년이상 9 년미만	20.0%
9 년이상 10 년미만	20.0%

③ 15 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 년미만	100.0%
1 년이상 2 년미만	93.3%
2 년이상 3 년미만	86.7%
3 년이상 4 년미만	80.0%
4 년이상 5 년미만	73.3%
5 년이상 6 년미만	66.7%
6 년이상 7 년미만	60.0%
7 년이상 8 년미만	53.3%
8 년이상 9 년미만	46.7%
9 년이상 10 년미만	40.0%
10 년이상 11 년미만	33.3%
11 년이상 12 년미만	26.7%
12 년이상 13 년미만	20.0%
13 년이상 14 년미만	20.0%
14 년이상 15 년미만	20.0%

④ 20 년만기

피보험자 사망시기	지급액
1 년미만	100.0%
1 년이상 2 년미만	95.0%
2 년이상 3 년미만	90.0%
3 년이상 4 년미만	85.0%
4 년이상 5 년미만	80.0%
5 년이상 6 년미만	75.0%
6 년이상 7 년미만	70.0%
7 년이상 8 년미만	65.0%
8 년이상 9 년미만	60.0%
9 년이상 10 년미만	55.0%
10 년이상 11 년미만	50.0%
11 년이상 12 년미만	45.0%
12 년이상 13 년미만	40.0%
13 년이상 14 년미만	35.0%
14 년이상 15 년미만	30.0%
15 년이상 16 년미만	25.0%
16 년이상 17 년미만	20.0%
17 년이상 18 년미만	20.0%
18 년이상 19 년미만	20.0%
19 년이상 20 년미만	20.0%

(2)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3)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 약관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3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3

1

1 【 】

2 【 】

3 【 】

4 【 】

5 【 】

6 【 】

2

()

7 【 】

8 【 】

9 【 】

3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4

가

17 【 】

5

18 【 】

19 【 】

6

20 【 】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1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별표 5(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 (barinCT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3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 6(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4 【 】

가 ,
1 () 2
(“ ”)
3 (1“ ”) .

15 【 】

가

2 3 가 , ,

14 () 3
1 .

가 1 () 2

, 14
() 3 가 , 1 ()
) 2 .

16 【 】

4 가

17 【 】

가

가

180

5

18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 진단서, 상피내암 진단서, 뇌졸중 진단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별표 1)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3 대성인병치료자금 (약관 제 14 조)

지 급 사 유	지 급 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각각에 대해 1 회에 한함)	500 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 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 만원

(별표 2)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4)

약관에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제 1993-3 호 1995.1.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5)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6)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제 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3 호, 1995. 1. 1 시행)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4

14 []

15 []

5

16 []

6 【 10월 15일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 ”) 1 가 3
() 6
가 .

2 ()

7 【 10월 15일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10월 15일 】

9 【 10월 15일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10 【 10월 15일 】

(2) (“ ”)
3 “ ” (“ ”) 2
6 (“ ”) 가 (“ ”)
(1 “ ”) .

11 【 10월 15일 】

10 () 180

가

10 ()

가 1

9 () 가 가

10 () 가

가

3 가 2 가

가

3 가 가 가

4 가 가 4

가

1. 가

2. 1 가

가 70%

12 【 () 】

가 가

1. 가

가

2. 가 가

가

3. 가

1 가

1. 1 1

2. 1 2

13 【 】

4

14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5 【 】

14 ()

3

10

1

7

5

16 【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_____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재해장해급여금(약관 제 10 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제 2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제 2 급 : 700 만원 제 3 급 : 500 만원 제 4 급 : 300 만원 제 5 급 : 150 만원 제 6 급 : 100 만원

(별표 2)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의 약관(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1

1 []

2 []

3 []

4 []

5 []

6 []

2 ()

7 []

8 []

9 []

3 ()

10 []

11 []

12 []

13 []

14 []

4

15 []

16 []

6

17 []

1

1 【 】

가 가
 가 . (“ ” “ ”, “ ”
 “ ”, “ ” “ ”)
 1
 가 .
 1 (가
 1 , 가 가
 1 ,)
 .

2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단,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3 【 】

가
 .
 가 가
 , 가 14
 () .

4 【 】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

가 10 ()
(“ ”) (1 “ ”)

12 【 】

가
3 (“ ”) 2 3
가
가 2 가
1
)가 2() (“ ”
11 () 가 가 1

13 【 】

가 가
1. 가 ()
가 가
1
2. 가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4 【 】

“ ”

(별표 1) _____

(특약보험가입금액 : 1,000 만원)

■ 수술급여금 (약관 제 11 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지급액	1 종수술	20 만원
	2 종수술	50 만원
	3 종수술	100 만원

(2)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3) _____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 약관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 피부·유방의 수술(皮膚·乳房의 手術) 1. 식피술(植皮術) (25 cm ²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2 2
* 근골의수술(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골결핵 수술(骨髓炎·骨結核 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觀血手術) [비골·비중격(鼻骨·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하악골·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下顎骨·顎關節 觀血手術) [치·치육(齒·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골반 관혈수술(脊椎·骨盤 觀血手術) 9. 쇄골·견갑골·늑골·흉골 관혈수술 (鎖骨·肩胛骨·肋骨·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2 2 2 1 2 2 1 2 2 1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13. 근·건·인대 관혈수술 (筋·腱·靱帶 觀血手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근염·결절종·점액종수술(筋炎·結節腫·粘液腫手術)은 제외함]	1
* 호흡기·흉부의수술(呼吸器·胸部 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 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 根本手術) 1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2 16. 기관·기관지·폐·흉막수술(氣管·氣管支·肺·胸膜手術) 2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2 18. 종격종양 적출술(縱隔腫瘍 摘出術) 3	
* 순환기·비의수술(循環器·鼻의 手術) 19. 관혈적혈관 형성술(觀血的血管 形成術) 2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의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 根本手術) 1 21. 대동맥·대정맥·폐동맥·관동맥수술 (大動脈·大靜脈·肺動脈·冠動脈手術) 3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절개·봉합술(心膜切開·縫合術) 2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3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込術) 2 25. 비적제술(鼻摘除術) 2	
* 소화기의 수술(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 27. 악하선종양 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1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3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30. 기타의 위·식도수술(胃·食道手術) [개흉·개복술(開胸·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2
32. 간장·담낭·담도·췌장 관혈수술(肝臟·膽囊·膽道·胰臟 觀血手術)	2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1
34. 충수절제술·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盲腸縫縮術)	1
35.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2
36. 기타의 장·장간막수술(腸·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7. 치루·탈항·치핵 근본수술(痔瘻·脫肛·痔核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한것으로 처치 ·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1
* 뇨·성기의 수술(尿·性器 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
39. 신장·신우·뇨관·방광 관혈수술(腎臟·腎盂·尿管·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3
43. 고환·부고환·정관·정색·정낭·전립선수술 (睪丸·副睪丸·精管·精索·精囊·前立腺手術)	2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1
45. 자궁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全摘除術)은 제외함]	3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46. 자궁경관형성술·자궁경관봉축술(子宮頸管形成術·子宮頸管縫縮術)	1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48. 자궁외임수술(子宮外妊娠手術)	1
49. 자궁탈·질탈수술(子宮脫·陰脫手術)	2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2
[자궁경관 Polyp 절제술·인공임신중	2
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人工 妊娠中絶術)은 제외함]	2
51. 난관·난소 관혈수술(卵管·卵巢 觀血手術)	1
[경질적조작(經腔的操作)은 제외함]	
52. 기타의 난관·난소수술(卵管·卵巢手術)	
* 내분비기의 수술(內分泌器의 手術)	
53.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除術)	3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2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2
* 신경의 수술(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3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2
[형성술·이식술·절제술·감압술·개방술·염제술	
(形成術·移植術·切除術·減壓術·開放術·捻除術)]	
58. 관혈적척수종양 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 摘出手術)	3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
* 감각기·시기의 수술(感覺器·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1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1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1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1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1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65. 관혈적전방·홍채·초자체·안와내이물제거술 (觀血的前房·虹彩·硝子體·眼窩內異物除去術)	1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1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2
68. 백내장·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水晶體 觀血手術)	2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
71. Laser·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1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 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72. 안구적제술·조직충진술(眼球摘除術·組織充填術)	2
73. 안와종양 적출술(眼窩腫瘍 摘出術)	2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1
* 감각기·청기의 수술(感覺器·聽器의 手術)	
75. 관혈적고막·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鼓室形成術)	2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1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2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2
79. 청신경종양 적출술(聽神經腫瘍 摘出術)	3
* 악성신생물의 수술(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生物 根治手術)	3
81.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	1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 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2.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2

수 술 명	수술종류분류(종)
* 상기 이외의 수술(上記 以外의 手術)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 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 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 장기수술(腦·喉頭·胸部·腹部 臟器手術) [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 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2 1 2 1
*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 일간에 1 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 (주) 1.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미용성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않는 불임수술, 진단·검사[생검, 복강경검사(生檢, 腹腔鏡檢査)등]를 위한 수술등은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상기 「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手術分類表」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 합니다.

1

1 【 】

2 【 】

3 【 】

4 【 】

5 【 】

6 【 】

2 ()

7 【 】

8 【 】

9 【 】

3 ()

10 【 】

11 【 】

12 【 】

13 【 】

4

14 【 】

15 【 】

5

16 【 】

2 ()

7 【 】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8 【 】

1 2

9 【 】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

10 【 】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 】

가 (2)
(" ") 4
(" ") (1 "
")

12 【 】

가

1 5 1 120

가

가

2

1

3

180

가

3

(3)

가

1

11 (

) 가

가

가

13 【 】

4

14 【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 항 제 2 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1) _____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 입원급여금(약관 제 11 조)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 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 일 초과 입원일수 1 일당)
지 급 액	10,000 원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II. 신생물	C00-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VI. 신경계의 질환	G00-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VIII.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H95
IX. 순환기계의 질환	I00-I99
X. 호흡기계의 질환	J00-J99
XI. 소화기계의 질환	K00-K93
X .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L99
X .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X .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N99
XV. 임신·출산 및 산욕	O00-O99
X .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X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S00-T98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Y98
·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항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제 4 차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1

- 1 【 】
- 2 【 】
- 3 【 】
- 4 【 】
- 5 【 】

2 ()

- 6 【 】
- 7 【 】

3 ()

- 8 【 】
- 9 【 】
- 10 【 】

4

- 11 【 】
- 12 【 】
- 13 【 】
- 14 【 】

5

- 15 【 가 】
- 16 【 】
- 17 【 】

1

1 【 】

, 가
가

(“ ”, “ ”, “ ”)

1

가

가

, 8 (

)

가

2 【 】

. 1

2

3 【 】

가

가

4 【 】

1

5 【 】

가

12

1

” “

”

1

“

2

()

가 8 ()

4

11 【 】

가

가

(“ ”)가 12 ()
13 ()

1.

2.

3

1

가

12 【 】

1. ()

2.

3.

4. ()

13 【 】

5 ()

가

1. ()

2.

3.

4.

5. ()

6. ()

7.

무배당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무배당 특별조건부특약 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 특약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주된 보험계약과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한 것을 말하며,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이라 합니다.
- ② 특약을 연생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③ 특약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2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3 조(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1. 할증보험료법

할증사망율(割増死亡率)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標準體)보험료와의 차액을 할증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통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할증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削減期間)내에 보험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제 1 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80%	60%
4 5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 27 조(실종의 선고) 제 2 항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거나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연령가산법

할증사망율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年增數)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사망지수(死亡指數)가 실제 n 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사망율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 년증이라 칭하고 n 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4. 할증보험료와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수 있습니다.

5. 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併用)할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4 ()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5 ()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6 []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약관

(1)

1	.
2	()
3	
4	,
5	
6	, , ,
7	(,)
8	
9	, , , ,
10	(, , , ,)
11	(, , ,)
12	
13	,
14	
15	()
16	()
17	
18	(), , ,
19	
20	()
21	()

22	()
23	()
24	
25	
26	
27	
28	()
29	()
30	()
31	()
32	()
33	(, 가)
34	
35	()

(2)

3

(1993 ,1995.1.1)

1		100 102 105 109 120 125 126 128 130 152
2		160 169
3		E10 E14
4		110 114
5		A15 A19 B90

4

(3)

무배당 알리안츠 양로보험 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 1 【 】
- 2 【 】
- 3 【 】
- 4 【 】
- 5 【 】

1 【 】
 (“ ”) 가 2
가 (“ (順延)”)

2 【 】
1 “ ”
,
,

3 【 】
가 가 1, 2
1.
2 () 1
2.

4 【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후 계약의 배당금은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5 【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